

비전임교원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고운학원 정관 제43조의 3에 의거하여 전임교원을 제외한 교원(이하 “비전임교원”이라 한다)의 정의, 자격과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전임교원의 구분) 비전임교원은 명예교수, 석좌교수, 객원교수, 특임교수, 대우교수, 연구교수, 초빙교수, 겸임교수, 강사로 구분한다.

제3조(정의 및 자격) ① 명예교수는 본교 교원으로 18년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자 또는 본교 교원으로 15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자 중에서 대학발전에 현저히 공헌한 교수로서 재직 중 20편 이상의 논문 또는 최근 10년간 5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자 또는 교육 및 학술적 공적이 뛰어나고 덕망이 높아 다른 교원에 모범이 되어 명예직으로 추대된 교원을 말한다.

② 석좌교수는 국내외적으로 학문적 연구업적이 현저한 권위자를 말한다.

③ 객원교수는 해당분야에서 오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교육 및 연구, 학생지도 등의 오랜 경험과 업적을 갖춘 자를 말한다.

④ 특임교수는 총장이 부의하는 교육 및 연구, 산학협력활동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 학교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⑤ 대우교수는 본교에서 전임교원으로 근무하고 퇴임한자 또는 학교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강의 또는 학생지도 등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⑥ 연구교수는 본교 특정분야의 연구수행을 위하여 연구기금을 유치하거나 본교의 연구력을 증진시킬 능력을 갖춘 자를 말한다.

⑦ 초빙교수는 한국인학자 또는 외국인학자 중 본교 교원의 자격에 준하는 자로서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⑧ 겸임교수는 산업체, 연구기관,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에 소속된 자로서 직위나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⑨ 강사는 교육과정의 운영상 시간 단위로 강의를 담당하도록 위촉된 자로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조(개별위촉 및 계약의 원칙) 비전임교원의 위촉 및 계약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라 할지라도 대상자별로 그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임용절차) ① 석좌교수, 객원교수, 특임교수, 대우교수는 소속 대학(원)장, 부속기관장, 부설연구소(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용한다.

② 연구교수는 해당 대학(원)장, 부속기관장, 부설연구소(원)장의 추천 또는 한국연구재단 학술연구교수로 선정된 경우 총장이 임용한다.

③ 명예교수, 초빙교수, 겸임교수는 소속 대학(원)장, 부속기관장, 부설연구소(원)장의 추천을 통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제6조(임용기간, 재임용) ① 비전임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초빙교수, 대우교수는 각각 연속하여 임용일로부터 5년, 2년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없다.

② 정년은 연구교수, 초빙교수, 겸임교수는 만65세에 달하는 학기의 말일까지로 하며, 객원교수, 대우교수, 특임교수는 만70세, 석좌교수는 만75세에 달하는 학기의 말일까지로 한다. 단, 명예교수는 종신으로 한다.

- ③ 연구교수의 임용기간은 관련 연구기간 이내로 하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외부기관의 위탁에 의한 경우는 해당 기관과의 협정에 의한다.
- ④ 겸임교수, 초빙교수의 재임용을 위해서는 임용기간 동안의 강의평가 점수 3.75점이상, 학과(부)장 또는 대학원(장) 평가서 각 항목별 C 등급 이상 이어야 한다.

제7조(구비서류) 비전임교원 임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무처장은 그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1. 명예교수, 석좌교수, 객원교수, 특임교수, 대우교수

가. 명예교수신청서

나. 이력서

다. 소속 대학(원)장, 부속기관장 또는 부설연구소(원)장 추천서

라. 학력 및 경력증명서 (명예교수 제외)

2. 초빙교수, 연구교수

가. 이력서

나. 소속 대학(원)장, 부속기관장 또는 부설연구소(원)장 추천서 또는 학술진흥재단 선정시 공문사본

다. 학력 및 경력증명서

3. 겸임교수

가. 이력서

나. 소속 대학(원)장, 부속기관장, 부설연구소(원)장의 추천서

다. 학력, 재직 및 경력증명서

라. 본직기관장의 동의서

제8조(의무) ① 비전임교원은 학교법인 고운학원 정관 및 본교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비전임교원은 별도로 정하는 교육, 연구, 교내외 활동에 관한 교원윤리헌장 등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③ 비전임교원은 본교에서 요청하는 특강, 초청세미나, 해당 직종의 역할과 부합하는 일 등에 응할 의무를 진다.

제9조(강의) ① 비전임교원은 정규교과 강의를 하거나 총장의 승인을 받아 특강 등을 할 수 있다.

② 명예교수는 만 70세까지 학기별 6시간의 강의를 담당할 수 있다.

③ 석좌교수, 객원교수, 특임교수, 대우교수, 초빙교수, 겸임교수는 학기별 9시간의 강의를 담당할 수 있다.

제10조(처우) ① 비전임교원 중 계약에 의해 임용된 경우 약정서에 의한다.

② 명예교수는 강의시 시간당 강사료는 별도로 총장이 정한다.

③ 비전임교원 중 비급여인 경우 강의시 시간당 강사료를 지급한다.

제11조(해임) ① 비전임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당연히 해임되며 별도의 해임통보를 하지 아니한다.

② 비전임교원이 임용기간 중이라도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본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겸임교수가 임용기간 중이라도 본직기관의 직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보칙)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약정서, 정관 및 본교의 관련규정을 준용하거나 별도로 총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 ①(시행일) 본 규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규정) 본 규정 시행일 이전에 임용된 겸임교수, 초빙교수, 명예교수, 객원교수, 석좌교수에 대하여는 2010년 5월 1일 이후 재임용부터 본 규정을 적용한다.
- ③(규정의 폐지) 본 규정 시행일로부터 명예교수규정, 객원교수규정, 석좌교수규정, 겸임교원규정, 초빙교원규정, 연구교수위촉규정, 전임대우교수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